

<의안번호 제2008 - 5호>

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. 02. 05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8. 02. 12.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07. 12. 13. 공포)사항을 반영하고, 「호적법」이 폐지되고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른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수정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
⇒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나. 본청 여유기구를 실과에 포함(안 제3조, 제4조)
 - 여유기구(전략사업추진단) ⇒ 실과에 포함
- 다. 읍면 직무의 기초사무 수정(안 제24조)
 - 호적 ⇒ 가족관계등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2조, 제113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,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8. 01. 09. ~ 2008. 01. 29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07. 12.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종전에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,

그 기구수를 실·과·담당관의 수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여유기구로 설치되었던 전략사업추진단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거 실·과의 수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며,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조문과 주요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취

[지방자치법]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[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]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

부칙 <제8435호, 2007.5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법률) 호적법은 폐지한다. 다만,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·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「국적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「호적법」 제109조, 제109조의2,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, 위 「호적법」 조항들을 적용할 때 「호적법」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,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.